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 의 · 회 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1. 공사의 기성부분 판단기준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건물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물을 기성부분 인수절차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기성부분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시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경우 그 부분 상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인수절차 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2. 신기술공법의 제한경쟁 가능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신기술공법 86%, 일반공법 14%일 경우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Ⅲ-2-다-②-㉔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신기술이 공사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Ⅲ-2-다-② 규정에 의거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신기술 공법이 전체 공사의 86%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설계공모 당선자와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시청앞 광장조성 기본계획 설계공모에 따른 당선자와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공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차목 규정에 의거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4. 공사의 원가계산 방법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에 기존 구조물 등의 철거,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발생



되는 고철, 암석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 제4장 제3절 공사원가계산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작업설 또는 부산물이란 작업폐물로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의 부스러기, 파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한 고철, 암석 등은 작업설,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참고로, 시공중에 발생된 고철 등은 매각하여 자치단체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임.

5. 마감공사의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계속비 공사에 있어 지장물 보상협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공정에 대하여 타절준공 처리되고 남은 잔여공정에 대하여 마감공사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가 규정에 의거 마감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 1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귀 질의하신 사항처럼 타절준공 처리되고 남은 공정은 동 예규에 의거 '마감공사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공사로 보아야 할 것임.

6. 공유재산 임대관련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질 의〉

1.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허가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일반음식점업으로 하였으나 최고가입찰자인 A법인이 (주)○○ 대표자 ‘갑’의 위탁급식영업신고증과 개인명의 ‘갑’의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을 제출한 것이 유효한 입찰인지?
2. 최고가입찰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통보를 하였으나 확인결과 일반음식점업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취소를 한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 또는 입찰자 전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계기관이 발행한 문서사본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바, 법인이 개인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2,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를 잘못 보아 낙찰자 결정을 한 후에 착오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7. 기술용역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1. ○○박물관 건립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현상공모에 당선된 건축 및 전시설



계약체가 총사업비 195억원(건축 65억원, 전시 130억원) 규모의 기본설계용역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223억원(건축 93억원, 전시 130억)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주기관이 당초 사업비 195억원 범위 내에서 건축비를 우선 반영하여 상호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기존설비를 활용하려던 기계·통신설비 등이 전면교체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설계 금액이 당초 공모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예산확보를 할 수 없어 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경우 초과 설계분을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 변경, 특정용역항목 삭제·감소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증액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 대자에게 당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질의2에 대하여]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 물량을 감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초과 설계분을 제외하고 검사하는 것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8. 하도급대금지급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

〈질 의〉

선금보증서를 확보한 후 선금을 지급하고, 이후 하도급계약과 하도급직불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과 선금 정산의 우선순위는?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타절준공으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있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선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일괄입찰의 입찰유무효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 입찰안내서에 위반된 기본설계서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을 경우 기본설계 입찰의 유·무효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입찰안내서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바,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안내서에 제시한 내용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했는지 여부 등 계약담당자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입찰 유·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10. 시설부대비 집행범위

〈질 의〉

시설부대비의 집행범위에 있어 담당 계장 또는 담당 과장의 관내 또는 관외 출장명령이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Ⅲ-10-2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시설부대비(401-03) 규정에 의거 시설부대비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의 의미는 감독공무원 이외에 관련전문가나 관련공무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에 출장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공사관련 담당 계장 및 과장이 단체장의 명을 받아 공사감독 또는 점검을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장하였다면 시설부대비의 집행이 가능하나, 단순한 관내순찰 등 일상적인 출장인 경우 시설부대비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음.

11.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방법**〈질 의〉**

설계용역 계약에 있어 과업변경 지시를 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용역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제16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동 예규 제16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12. 물품구매입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 의〉

전산소모품 구매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한이 가능할 경우 정품공급확약서 미제출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 구매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입찰자의 당해물품 납품능력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그 업체는 입찰무효처리 되는 것임.

13. 수의계약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 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추정가격 1억미만 제외) 또는 경쟁입찰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계변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증액, 감액 모두 가능)이 가능함.



14. 접적지역등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라목에 의하여 접적 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바,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북제주군 추자도가 특수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수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및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도서·벽지등 특수지역 공사로서 자격요건·계약이행능력 등을 갖춘 자가 한정되어 경쟁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5.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적용방법

〈질 의〉

단위 인식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로서 감액 설계변경할 경우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여부와 설계변경시 당초 비목의 규격 및 단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비목 적용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며, 다만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임. 또한, 당초 비목의 규격 및 단위가 변경된 경우는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함.

16. 공동도급관련 입찰유무효 여부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대표사 포함 3개사로 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여시 대표사 포함 2개사로 상이하게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토록 할 수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대표사 포함 3개사의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이며, 대표사 포함 2개사는 적격자가 아니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됨.

17. 작업상 혼잡 사유로 수의계약시 면허충족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수도공사(전문건설업)에 있어 작업상 혼잡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범위가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에 해당된다면 일반건설업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함.

18.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가능 여부**〈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용역 등 일반용역 입찰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매년 초에 시·군·구에 필요한 용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 표준안을 작성,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준용할 수 없을 것이며, 시·도별로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19. 계약해지 후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여부**〈질 의〉**

공개경쟁입찰에 있어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완료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

명되어 계약해제 되었을 경우 차순위자와의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다만,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전자견적에 의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 지방의회의원 입찰참가 제한 판단기준

〈질 의〉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가 임기중 입찰공고되고 임기 후 계약 체결될 건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의원 신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21. 특정상표로 제한하여 물품구매입찰 가능여부

〈질 의〉

특정상표의 물품을 지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IV-⑦ 규정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특정상표의 물품을 지정한 입찰은 금지사항이며, 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여부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2. 기술자보유증명서 오류발급시 계약해제 적용 가능여부

〈질 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적격심사 통과후 계약체결하였으나, 추후 건설기술자 보유 부족통보를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받은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진행현황

- 입찰일(투찰일) : 2006. 4. 3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준일 : 4. 2
- 기술자(1인) 퇴사일 : 2006. 3. 31
- 기술자(1인) 입사일 : 2006. 4. 1
- 기술자 입·퇴사 신고일 : 2006. 4. 17(건설기술인 협회에서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는 퇴사는 소급적용, 입사는 4. 17부터 적용 통보)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 9> 3-주1) 규정에 의거 기술자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입찰일 전일현재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당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23.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방법

〈질 의〉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고, 적격심사 평가기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Ⅲ-2-가-④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 1> 주1)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에 따라 평가기준 규모는 발주자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로, 실적인정 규모는 입찰공고에서 제한



한 실적규모(금액으로 제한한 경우 규모로 환산)로 하며, 실적인정범위는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4. 소멸시효 완성시 예치금 반환 가능여부

〈질 의〉

맨홀원상복구예치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 반환신청이 없어 5년이 경과되어 세입조치하였으나, 이후 동 예치금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하였거나 약정이 없는 한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반환이 불가능한 것임.

25. 부정한 물품납품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질 의〉

물품납품을 정품으로 하지 않고 재생품으로 부정하게 납품하여 정품대비 차액을 환수조치하고 검찰에 고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 나목의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에서 단가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한바,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하여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 부정 등의 사유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벌금형 여부 등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가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의미함.

26. 분할납품과 지체상금

<질 의>

물품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산정시 계약기간 내 납품한 물량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3호) 제24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바,

□질의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고, 인수(관리·사용 포함)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기납된 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담당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인수(관리·사용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27. 입찰조건 미확인하고 계약한 건의 처리방법

<질 의>

기존 업체가 흡수합병(대표자 동일)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아 입찰무효에 해당되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체결하여 이행중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중인 경우라면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51조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여부, 현재 계약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해제·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 허위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낙찰을 받기위하여 서류작성을 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이는 계약담당자가 확인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임

28.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범위

〈질 의〉

일직선 방파제 축조공사에 있어 1차(2002년), 2차(2003년), 3차(2004년), 4차(2005년)로년도별로 차수를 달리하여 시공하였고 금번 5차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동 요령 기술사항 평가에서 전차공사의 범위가 4차 공사만 해당되는지, 이전에 시공한 1차~4차 공사가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마-(2)의 규정에 의거 전차공사는 하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질의사항과 같이 일직선 방파제축조공사의 전차공사는 금차공사와 하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4차 공사가 이에 해당됨

29. 기성부분의 지체상금 제외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지체상금 산출에 있어 당해공사의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실제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체상금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195호)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을 인수하였거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30. 학술연구용역의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범위는

〈회 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 190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함